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42

발의연월일 : 2021. 12. 29.

발 의 자:서영교・박재호・한병도

오영환 · 이해식 · 김영호

김회재 · 서영석 · 설 훈

신영대 · 신정훈 · 윤준병

이용빈 · 장경태 · 전용기

최인호 · 홍정민 ·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희귀병 걸린 소방관, 범인을 검거하다 다친 경찰관, 추운 날씨 긴 시간 밖에서 일하다 빙판길에서 다친 집배원. 현행제도 상 특수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걸리거나, 그로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이나 유족에게만 있음.

민사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질병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끝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의 몫이 되는 실정인 것임.

국민 세금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달리, 피해자는 사비로 해야하는데 2년 남짓 걸리는 행정소송에 패소라도 하면 비

용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매우심각함.

이에 공상추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첫째,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추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현재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심의회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에 비해 처리기간이 장시간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엔 심의를 생략하며,

셋째, 현재 공무원재해 관련 현장조사는 퇴직공무원, 특수질병 전문 조사는 직업환경의학회, 재해보상제도 연구용역은 인사처·공단 등이 단기수행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 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한다.

제3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공무원 재해보상연구원 설립) ① 공무상 재해에 대한 종합

- 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재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연구
- 2. 공무상 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
- 3. 공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지원(역학조사 등)
- 4. 공무원 안전보건정책 연구 및 직업화경 개선 연구
- 5.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연구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⑥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인사혁신처장은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⑧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
	례)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
	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
	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
	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
	<u>상 재해로 추정한다.</u>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생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
	<u>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u>
	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
	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	3
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	
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u>제</u>	<u>제2</u>
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	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

한다.

④·⑤ (생략) <신 설>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 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공무원 재해보상연구 원 설립) ① 공무상 재해에 대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재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 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 2. 공무상 재해 실태조사 및 통 계 분석
- 3. 공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관 련성 평가 지원(역학조사 등)

- 4. 공무원
 안전보건정책
 연구

 및 직업환경
 개선
 연구
- 5.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⑤ 연구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⑥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인사혁신처장은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⑧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